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8
----------	-----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납세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
- 나. 「지방세법」 인용 조항 정비(안 제14조)
 - 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제13조제5항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1. 5.31. ~ 6.20.)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4) 행정안전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업무처리 기준 통보 (세정과 - 5169호, 2011. 5. 1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납세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제14조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1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납세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p>제14조(감면 제외대상) ----- -----제 13조제 3항-----</p>	<p>14조(감면 제외대상) ----- -----제13조제 5항-----</p>

관 련 법 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본조신설 2010.12.27]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2.27]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참고자료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통보 공문

청렴의 힘! 대전의 경쟁력입니다.



대전광역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업무처리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265(2011-5.2)호와 관련입니다.

2. '11.3.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구세감면조례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행정안전부) 1부.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진행중). 끝.

대전광역시장

수신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세무팀장)

주무관 세정담당 세정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세정과-5169 (2011.05.18.) 접수 세무과-7706 (2011.05.19.)

우 302789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1420번지) / <http://www.daejeon.go.kr/>

전화 042-600-5222 /전송 042-600-2329 / kimdhyo@daejeon.go.kr / 공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 정기고지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고지서 1장당 조례가 정하는 금액(150원 ~ 1,000원)을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 : 150원 ~ 50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같이 신청한 경우 : 300원 ~ 1,000원
- ※ 우리시 : 자동계좌이체만 신청(15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500원)

□ 운영기준

□□ 자동계좌이체, 전자고지 신청자 세액공제 기준

- 고지서 발송 이후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기분 납기 前월까지 신청한 납세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부과분부터 적용
- 고지서 발송 이후 자동이체를 해제한 경우
 -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실제 납부한 납세자만 세액공제
 - 자동이체 청구 이전까지 해제자료를 반영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전자송달하는 경우 이메일 계정오류 등으로 고지서가 재발송된 경우
 - 정기분 납부 전월까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다면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납세의지가 있었다 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됨
- 세목별 세액공제 순위
 - ① 보통세,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
 - ② 도세, 시군세의 경우 시도세 먼저 세액공제
 - ③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기준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을 본세의 “세액공제 이전 세액”으로 처리

(예시) A납세자의 승용차 자동차세 당초 세액 120,000원, 세액공제액 1,000원

세목	세액	산출방식
자동차세액	119,000	120,000(자동차세 당초세액) - 1,000(세액공제액) = 119,000원
교육세액	36,000	120,000(자동차세 당초세액) × 0.3 = 36,000원

□□ 세액공제로 소액 징수면제 등 징수면제 대상이 된 경우 처리방안

○ 당초 세액은 소액 징수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액공제로 인하여 소액 징수면제 대상이 된 경우

- 세액공제액을 감액하여, 2,000원 미만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

(예시) 재산세 2,300원, 지역자원시설세 2,300원, 지방교육세 690원이고, 세액공제 1,000원인 경우 처리방안

세목	산출세액	세액공제	부과세액	비고
재산세액	2,300	300	2,000	
지역자원시설세	2,300	300	2,000	
교육세액	690	400	290	
합계	5,290	1,000	4,290	

□□ 본세 징수면제의 경우 목적세(병기세목)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 본세가 감면 등으로 부과금액이 0원이 될 경우 목적세(병기세목)에서 세액공제 처리

(예시1)

※ '11.7월 A물건의 재산세 정기분 세액산출 재산세액 10,000원, 지역자원시설세 5,000원, 지방교육세 2,000원이고 세액공제금액이 1,000원일 경우 처리방안

세목	산출세액	세액공제	부과세액	비고
재산세액	10,000	1,000	9,000	보통세 우선공제
지역자원시설세	5,000	0	5,000	
교육세액	2,000	0	2,000	
합계	17,000	1,000	16,000	

(예시2)

※ '11.7월 B물건의 재산세 정기분 세액산출 재산세액 2,300원, 지역자원시설세 2,300원, 지방교육세 690원이고 세액공제금액이 1,000원일 경우 처리방안

세목	산출세액	세액공제	부과세액	비고
재산세액	2,300	300	2,000	세액공제액은 소액징수면제 기준금액한도
지역자원시설세	2,300	300	2,000	
교육세액	690	400	290	
합계	5,290	1,000	4,290	

□□ 잔고부족 등으로 체납발생시 징수부 반영 기준

○ 본세가 체납되어 세액공제 추정금을 징수결의 하는 경우

- 부과자료의 징수결정 회계월로 소급결의 및 징수부 등재

(예시) < 6월분 자동차세 처리 기준 > 자동차세 당초 세액 120,000원, 세액공제액 1,000원

- ① (6. 10) 자동차세 정기분 120,000원을 1,000 세액공제 처리하여 119,000 부과처리 및 징수결의
- ② (7. 1) 자동차세 미납건에 대하여 당초세액 120,000 3%인 3,600 가산금 처리
- ③ (7. 2) 금융결제원에서 자동이체 수납자료 수신 및 수납처리
- 자동이체 수납 건 119,000 납기 내 수납처리 및 3,600 가산금 자동 삭제
- ④ (7. 3) 자동이체 수납처리 후 잔고부족 등으로 미수납된 자료를 6.30 결의일로 세액공제 환원금 1,000 추가 결의

※ 자치단체 담당자는 6월분 징수보고 완료일(7.15)까지 세액공제 환원금 추가결의 완료

- ⑤ (7. 10) 관외분 수납 후 체납담당자가 미수납된 세액공제 대상자료 가산금 3,600 결의 수행

업무구분	날짜	세액	처리내용
① 부과	6.10	119,000	120,000(자동차세 당초세액) - 1,000(세액공제액)= 119,000원
② 가산금산출	7.1	3,600	120,000(자동차세 당초세액) × 0.03 = 3,600원
③ 자동이체 수납	7.2	119,000	120,000(자동차세 당초세액) - 1,000(세액공제액)= 119,000원
④ 추가 결의	7.3	1,000	잔고부족 등으로 미수납된 자료의 세액공제액(1,000) 추가결의
⑤ 가산금 결의	7.10	3,600	미수납된 자료의 7.1 생성된 가산금 3,600 결의

□ 협조사항

-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세액공제 사항을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
- 전자고지의 서류송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송달”하므로

- 고지서가 우편송달하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홍보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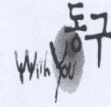
□ 동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통보서

구민과함께 내일이 행복한동구

함께지린청렴, 함께누리는행복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대전광역시동구청장

참 조 세 무 과 장

제목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통보

1.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9523(2011.6.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 기관에서 심의 요청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 붙임 : 1. 동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안 심의결과 통보서 1부
2. 동구 지방세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끝.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서기 김병곤 간사 박노승 부위원장 임종묵 위원장 김현주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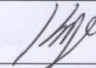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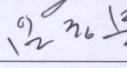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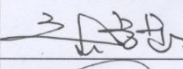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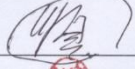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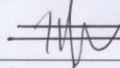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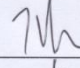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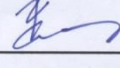
시행 대동지심2011 - 2 (2011. 6. 20) 접수 ()
우 300-070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85-5
전화 042)250-1292 /전송 042)250-1599

동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심의결과 통보서

	구 분	동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심의
심의내용	내 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 적정여부 등 - 자동계좌이체 신청 :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같이 신청 : 500원 공제
심 의 결 과		
결 정 주 문	동구청장이 심의요청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결 정 이 유	동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내용 적정	
<p>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1년 6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p>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번호	2011 - 2	의결년월일	2011. 6. 20.	
의안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주문	동구청장이 심의요청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의결이유	동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내용 적정			
심의안건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정여부 등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 :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500원 공제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결정내역	
			가	부
위원장	김현주		가	
부위원장	임종묵		가	
위원	권중순		가	
"	이정순		가	
"	윤재룡		가	
"	김병구	 (재외동장)	가	
"	김필규		가	
"	정상민		가	
"	이상병		가	
※ 결정내역 "가" 또는 "부"로 위원이 직접기입				